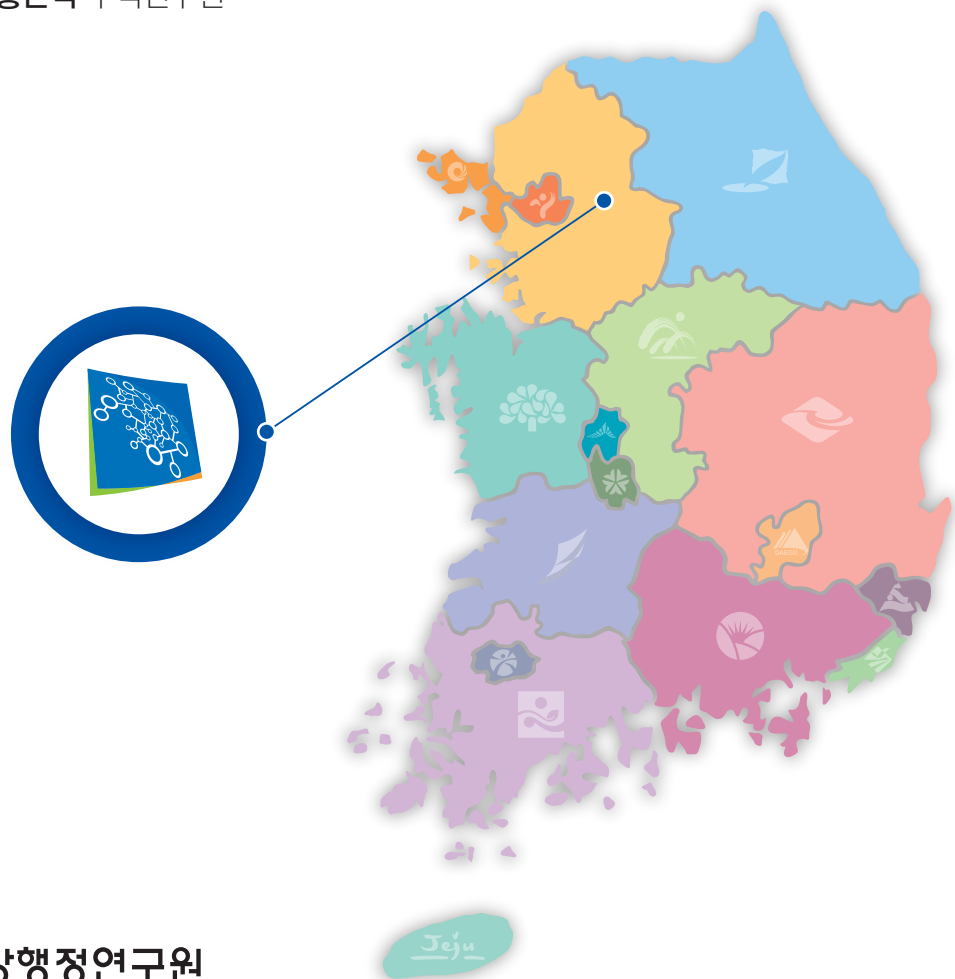


Policy ISSUE REPORT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윤태섭 수석연구원 홍근석 수석연구원





I. 서론

1. 제안배경
2. 주요 연구 내용

II. 타당성 (재)조사 기관의 지정

1. 타당성 (재)조사 기관 지정의 필요성
2. 타당성 (재)조사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리적 관계 설정
3.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와 시도연구원과의 역할 관계

III. 타당성 (재)조사 제외대상 기준 개선

1. 타당성 (재)조사 제외대상 기준 개선 제안
2. 타당성 (재)조사 기준에 대한 검토
3. 타당성 (재)조사 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

IV. 결론 및 요약

I. 서론

1 제안배경

- ✓ 지방재정법에 따라 모든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수행
- ✓ 업무편중에 따른 조사기간 장기화(6개월 이상) 해소와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의 다양화 검토가 필요
- ✓ 현행 타당성 (재)조사 제외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경기도 제안 배경)

2 주요 연구 내용

- ✓ 타당성 (재)조사 기관의 다양화 방안
 - 현 타당성 (재)조사 수행기관 지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자치단체 특수성과 지방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연구기관(경기연구원 등)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 연구
- ✓ 타당성 (재)조사 제외대상 기준 개선
 - 타당성 (재)조사 제외대상 기준 개선방안 연구
 - 현행 총사업비의 25% 이상 지출 시 타당성 (재)조사 제외 대상
 - 사업규모가 큰 경우 이미 많은 예산을 지출하여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으나 불필요하게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고 있어 사업기간 장기화 등 문제점 발생

II. 타당성 (재)조사 기관의 지정

1 타당성 (재)조사 기관 지정의 필요성

1)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

✓ 대두배경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재정의 지출 규모가 중앙재정의 지출규모를 초과
 -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용액: 약 169조 원 (국가 총재정사용액의 43.1%, 2015년 기준)
 - 지방재정 지출구조: 정책사업에 약 138조 원(약 80.1%)을 사용
 - 지방재정투자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책사업비의 효율적 관리 중요성이 대두
-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 소홀(정치적, 행정적 추진 경향)
 -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개발사업의 형식을 이용하여 재정사업의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식절차(타당성 심사, 투자심사 등)를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임
 - 사업수행 관리·감독 기준 부재, 타당성 결여, 총사업비 증가,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와 도덕적 해이 등 심각한 재정문제 발생(2013년 감사원 자료)
- 이에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유도를 위하여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가 필요

✓ 타당성 조사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

☑ 타당성 조사 운용방향

- 건전한 지방재정관리제도로의 정착을 위해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 전 투자심사를 이행케 함으로써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낭비 최소화
-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 심사를 실시
-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재정지원 및 예산편성

2)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설립 배경 및 근거

☑ 설립배경

-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기관을 직접 선정함으로써 인한 조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상실
 - 자체심사 시 통과율 98%, 시도심사 시 통과율 90%
- 공신력 있는 타당성 조사 기준 및 방법론 미비로 인한 조사결과의 신뢰성 미흡
 -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한 타당성 조사 전문 독립기관 설치 필요성 제기

☑ 설립근거

- 지방재정법(2014년 11월 29일 시행)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2호)
 - 지방재정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 조사의 업무전담을 위해 연구원 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신설

● 사업주관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 부족

-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이 동시에 추진되어 기본계획 수립 주체와 타당성 조사의 수행 주체가 동일해 지는 문제가 발생
- 사업주관부서가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타당성 조사 의뢰 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용역업체)에 사업 기본계획 수립까지 요청하는 문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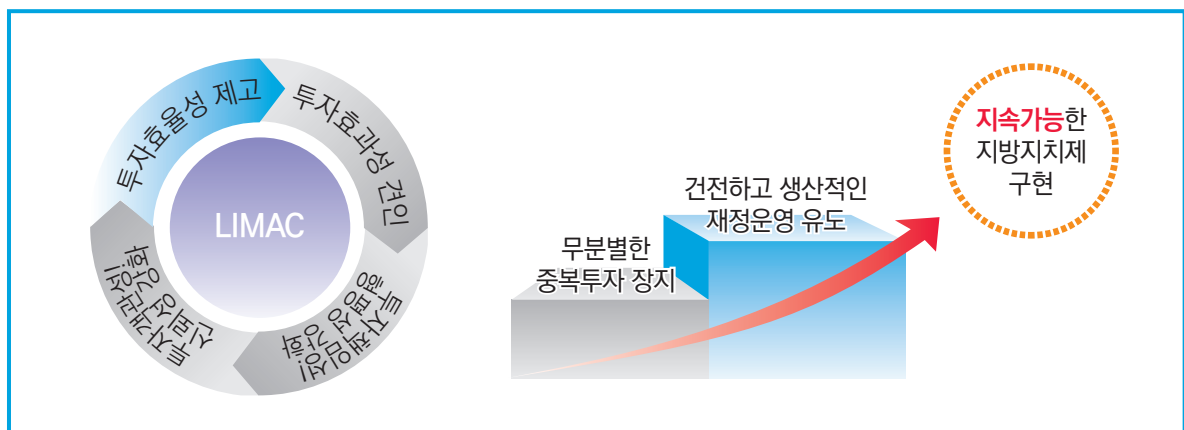
- 사업부서에서 직접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타당성 수행 주체로 자치단체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문제 발생
 -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 간 갑을관계 형성
 - 그 결과 타당성 조사 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음(조사 수행 주체는 발주처인 자치단체의 요구 사항 수용이 불가피하며 부실사업의 면죄부 역할)

3)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업무 범위 및 운영목표

✓ 업무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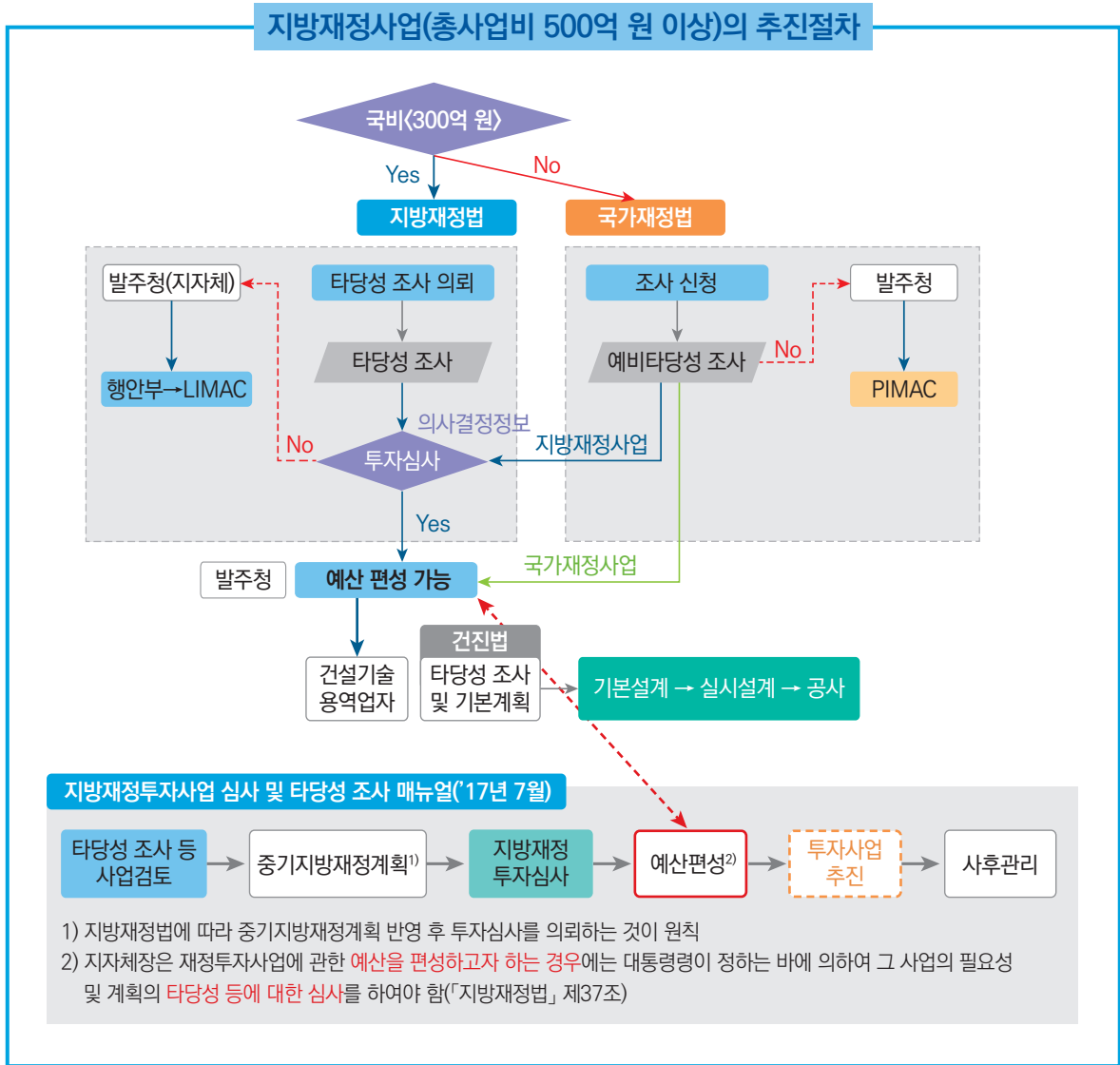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300억 원 미만)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 타당성 재조사(지방투자 심사규칙 제11조)
-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
-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관련 교육, 사업 이력관리 등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 전문기관

✓ 운영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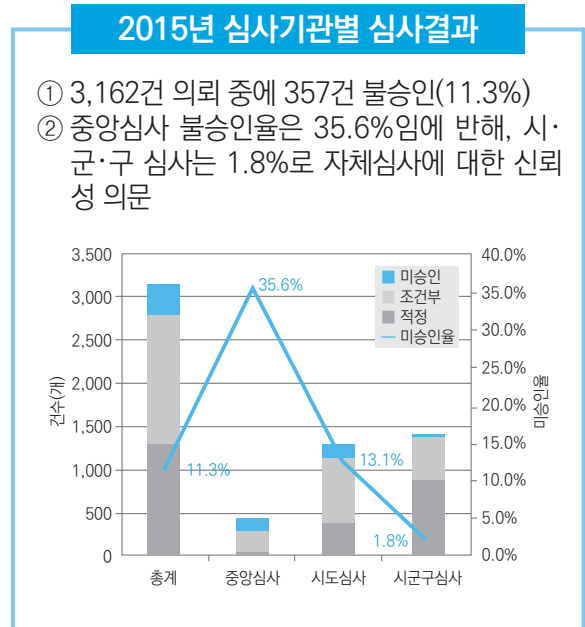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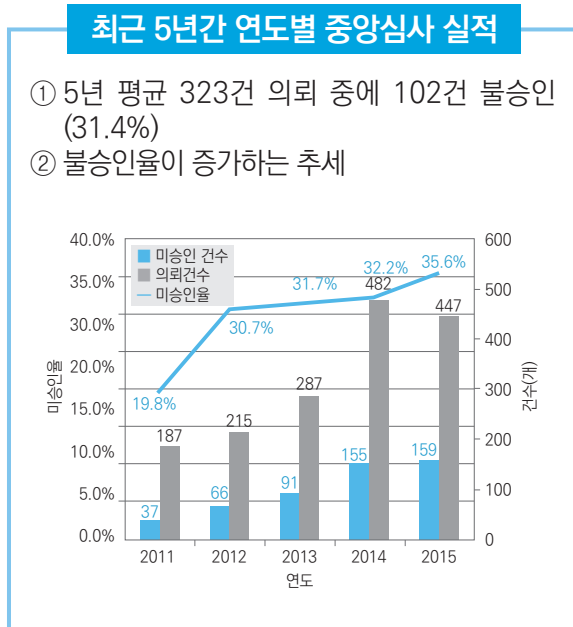
※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내부자료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내부자료

4)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설치효과



※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내부자료

2 타당성 (재)조사 기관(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리적 관계 설정

1)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설립 후 정책 방향

✓ 타당성 조사 기준 강화에 따른 투자심사 미승인률 증가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의무화
- 청사신축사업, 행사/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사업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 자체심사 축소 및 의뢰심사 강화
-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설립으로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
 - ➔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사업에 대한 정책기조 변화에 대응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새로운 역할 관계 정립이 필요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

✓ 자체심사 관련 실효성 제고 노력

- 자체심사 시 관대화 경향이 두드러져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뢰심사 비중이 대폭 확대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심사의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의 수준 향상이 필요
 - 사업부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극복
 -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한 구체화된 사업계획 필요
 - 투자심사의뢰서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 필요
 - 자체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심사제도 강화
 - 자체심사 대상사업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
- ➔ 시도 연구원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

✓ 사업계획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을 의뢰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
 - 타당성 조사 의뢰 시 구체적인 사업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전체 의뢰 사업 중 38%가 사업계획 미비 등으로 자진 철회 되거나 반려되는 실정 → 기간소요에 따른 약정시기가 연기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 타당성 조사 시 주요 추가 요청자료

- 총사업비, 운영비 세부산정 내역,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계획
- 사업지에 대한 토지지번조서 및 용지도(용지보상비에 대한 산출근거)
- 국비 지원 관련 협의 자료, 지원금액 산정 근거
- 세부 면적 계획 및 면적 산정 근거, 기존 시설 부지에 대한 향후 세부 계획
- 사업 추진 시 민원 관련 사항
- 분양계획, 분양가, 보증금 등
- 사업 추진 방식 및 운영 주체

3) 타당성 조사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내 전문조직 필요성

✓ 시도 연구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사업 사전 검토
-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 적격성 조사 및 업무지원
-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등 관련 연구·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조직 필요

예)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3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와 시도연구원과의 역할 관계

1) 지방재정투자사업관리센터의 주요 업무

- ✓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수행
- ✓ 지방공기업 설립,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전문기관 업무
- ✓ 이력관리, 심층점검 및 사후평가 사업
 - 이력관리대상사업 DB 관리
 - 중점관리사업 및 심층점검사업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관리계획 수립 관련 점검 및 시행관리
 - 심층점검 수행
 - 사후평가(향후 도입 예정)
 - 중앙투자심사 지원
 - 타당성 조사 지침 개발 및 관련 제도 연구

2) 지방재정투자사업관리센터와 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관계

※ 타당성 (재)조사 관련 업무에 대응하여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운용하듯이 지방자치단체 또한 시도연구원에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를 운영하여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1안) 타당성 (재)조사 영역에 따른 기능 배분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역할

- 현행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를 타당성 조사 관련 기능 중 연구 및 지침개발, 교육 기능에 중점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타당성 조사 관련 일반지침과 표준지침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수행
- 투융자심사제도에 대한 정책연구기능을 전담
 - 투자심사제도의 현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발굴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개발
 - 타당성 조사 표준지침과 같이 사업유형별 심사기준의 개발
 - 중기재정계획, 지방채무발행한도제, 재정위기사건경보제도 등에 관한 정책 연구수행
-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 타당성 조사 협력체계의 구성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총괄기구로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부여
- 지방투자사업의 특성과 전문영역에 따라 시도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와 협업체계에 의한 타당성 조사 수행
 - 지방투자사업을 다루는 타당성 조사의 경우 공공청사와 관련된 건축사업, 도로·교통, 지역개발, 환경오염방지시설, 지방공단 조성 등과 같이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협력기관의 다양화가 필요

■ 타당성 조사 협력을 위한 시도연구원과의 파트너십 형성

-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경우 총괄기구(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모든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보다 현실적이고 신뢰성 있는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해 시도연구원(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과의 협력관계 조성이 중요

- 지방공단 조성이나 환경오염방지시설, 도로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경우 지역실정에 밝은 시도연구원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타당성 조사 수행이 가능
- 도로건설 등과 같이 사전설계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전 설계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도연구원에서 수행토록 한 후, 본 타당성 조사 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관련 자료에 대해 검토

☑ (제2안)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의 역할에 따른 기능 배분

■ 타당성 (재)조사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 (재)조사 총괄기구(control tower) 역할
 - 사업의뢰서 및 사업계획 검토 → 조사 가능성, 실효성 등 검토
 - 타당성 (재)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 요청
 - 시도로부터의 타당성 조사 의뢰심사 및 시도연구원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
- (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재)조사 사전 조사 기능
 - 의뢰 사업 전 사전 검토 수행
 - 의뢰 전 각종 제출 서류 및 준비 사항 체크
 - 조사 수행 중 요청 사항 대응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 타당성 검토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 조사에 준해서 수행, 총괄기구 역할
 - 지방공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 타당성 검토
 -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 (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재)조사에 준한 사전 검토 기능
 - 의뢰 사업 전 사전 검토
 - 의뢰 전 각종 제출 서류 및 준비 사항 체크
 - 조사 수행 중 요청 사항 대응

■ 투자심사의뢰서 사전검토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사업내용 검토

- 수요, 비용, 규모 등 사업내용 검토 수행
- 회계별, 투자가용재원 판단, 가용재원 판단, 실무심사 조서 작성 등
- (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의뢰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 의뢰 전 각종 제출 서류 및 준비사항 체크
 - 조사 수행 중 요청 사항 대응
- 투자사업이력관리제도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 사업평가를 통해 관리계획 수립 대상 선정
 -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작성
 - (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정보관리업무 총괄
 - 사업부서가 제공한 입력정보 확인 및 최종입력
 - 오류 시 확인 및 재입력 등
 - 자체관리계획 작성 시 업무 지원

III. 타당성 (재)조사 제외대상 기준 개선

1 타당성 (재)조사 제외대상 기준 개선 제안

1) 제외대상 기준 개선의 필요성(경기도 제안배경)

- ✓ 현행 총사업비 25% 이상 지출 시 타당성 (재)조사 제외대상으로 선정
- ✓ 사업규모가 큰 경우 이미 많은 예산을 지출하여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으나 불필요하게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고 있어 사업기간 장기화 등 문제점이 발생
- ✓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추가 타당성 조사로 절차가 중복되며 사업지연을 초래

2) 타당성 (재)조사의 필요성 (행정안전부 의견)

- ✓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투자심사 이전의 사전절차임
- ✓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경우(국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는 면제되며 타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경우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2 타당성 (재)조사 기준에 대한 검토

1) 타당성 조사 대상

-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 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이행

※ 신규투자사업은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투자사업

- 즉,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았으며 사업기획, 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 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이 해당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 즉, BTL*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BTO*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2,000억 원 미만

*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 ①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 조사’와 관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와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어 별도 추진
- ② 「전시산업발전법」 제11조의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과의 관계: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결과에 따라 시설량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를 신청

2) 타당성 재조사 대상

☑ 재조사 필요성

-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친 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크게 변동된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의 검증력, 실효성 확보를 위함
- 단, 타당성 재조사는 투자 재심사가 수반되는 사업에만 실시

✓ 재조사 대상(심사규칙 제13조)

- 당초 투자심사 시에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 다만,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되어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 타당성 조사 후 총사업비가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사업(다만, 타당성 조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산정)
-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 후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 이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 재조사 면제대상(심사규칙 제13조)

-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상위계획 변경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
 - * 법규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되며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신청
- 이 외에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도로·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 이상인 경우와 기타사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인 경우로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 변경 등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3 타당성 (재)조사 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

1) 타당성 (재)조사 제외 대상 선정 기준

(경기도)

현행 총사업비 25% 이상 지출 시 타당성 (재)조사 제외 대상으로 선정

- ✔ **심사규칙 제13조에 의하면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친 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크게 변동된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의 검증력,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
- ✔ **그러나, 심사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경우 재조사를 면제**
 -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상위계획 변경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에 총사업비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
 - 이외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도로·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 이상인 경우와 기타사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인 경우로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 변경 등으로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 개정된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의하면 도로·건축물들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 이상인 경우 타당성 조사를 면제

(경기도)

사업규모가 큰 경우 이미 많은 예산을 지출하여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으나 불필요하게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고 있어 사업기간 장기화 등 문제점이 발생

- ➔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사업에 기 투입된 비용이 10% 이상인 도로·건축물 등 시설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기 투자 예산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심사규칙이 개정되어 불필요한 타당성 조사 이행으로 인한 사업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

2) 타당성 조사의 중복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추가 타당성 조사로 절차가 중복되며 사업 지연을 초래

(관련 사항) 내일신문, 문화일보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법 제37조 타당성 조사를 중복으로 해석

-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 타당성 조사를 손질 대상으로 규정...(문화일보 8/11 기사 中)
- “(권은희 의원)지방자치, 분권이라는 헌법정신에 역행하는 만큼 지방재정법 개정에 나설 방침”...(내일신문 8/11 기사 中)

✓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 조사

- (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더불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사대상)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 「도로법」 도로공사, 「철도건설법」 철도건설사업, 「항공법」 공항개발사업, 「하천법」 하천공사, 「댐법」 댐시설공사, 「수도법」 광역상수도시설 신·증설 또는 개량 공사
 - 그 밖에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 설치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 설치 및 해체공사
- (타당성 조사)
 -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발주청이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용역 완료 후 지체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타당성 조사 도입 시기 및 방법)
 - 별도 조사 지침 없이 시행되어 오다가 2016년 5월 19일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정(지침 제정 이전에는 분석방법론 등 부재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점 제기)
 - 지침의 주목적은 사업시행 확정 또는 전제된 상태에서 최적의 건설공사 시행방안(설계안, 공법 등)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 시에 예산 낭비 요소를 막는 데 있음
 - 건설진흥법의 타당성 조사는 사업 시행·미시행을 결정하는 심의 의결 기능이 없고 최종 성과물에 대한 품질관리 역시 부재한 상태

✓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건설진흥법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영향평가, 대안 및 공법에 따른 효율성 및 공사비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

✓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 수행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위계를 지님
- 지방재정법상 사업예산의 편성은 투자심사 통과 후 가능하므로 건설진흥법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투자심사 이후 가능하므로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와 중복되지 않음
 - ➡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위계를 지니며, 사업예산의 편성은 투자심사 이후 가능하므로 타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중복되는 절차가 아님
 - ➡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투자심사 이전의 사전절차임

- ▶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경우(국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는 면제되며 타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경우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 예비타당성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사업도 동일한 위계 및 절차를 지님을 의미할 수 있도록 매뉴얼 수정 등을 통해 타당성 조사 용어 변경을 추진(타당성 조사 → 지방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은 투자심사 통과 후 추진하는 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심사 이전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명명)

IV. 결론 및 요약

1 과제 제안 배경

☑ 타당성 (재)조사 기관의 다양화 방안

- 현 타당성 (재)조사 수행기관 지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자치단체 특수성과 지방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연구기관(경기연구원 등)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 연구

☑ 타당성 (재)조사 제외대상 기준 개선

- 타당성 (재)조사 제외대상 기준 개선방안 연구
 - 현행 총사업비의 25% 이상 지출 시 타당성 (재)조사 제외 대상
 - 사업규모가 큰 경우 이미 많은 예산을 지출하여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으나 불필요하게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고 있어 사업기간 장기화 등 문제점 발생

2 검토결과

☑ 업무편중에 따른 조사기간 장기화(6개월 이상) 해소와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다양화 검토가 필요

- ➡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경우 총괄기구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모든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신뢰성 있는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해 시도연구원과의 협력관계 조성이 필요(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유형별, 타당성 조사 과정 상 협업 등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

- ▶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위계를 지니며,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투자심사 이전의 사전절차
- ▶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제되며 타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경우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사전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 투자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이전에 사전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사전설계비가 포함되는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라도 사전설계비의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격상 사전설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가 완료 되기 이전 까지 설계비를 지출할 수 없어 사업수행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
- ▶ 사전설계비가 포함되는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경우 사전설계비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사업부서의 업무량 고려가 필요
 - 타당성 조사 시 사전설계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이 많은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사전설계 부분에 대한 준비 자료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가능하더라도 사업부서의 업무량이 과다해지는 문제가 발생

✔ 현행 타당성(재)조사 제외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경기도 제안 배경)

- ▶ 개정된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의거하여 도로·건축물들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 이상인 경우 타당성 조사를 면제

정책이슈리포트

